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798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3122호)	염태영의원	2025.9.1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직 접 회부(2025. 12.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503호)	박지혜의원	2025.11.2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직 접 회부(2025. 12.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713호)	서왕진의의원	2024.8.1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 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 회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931호)	이소영의원	2024.11.2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 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 회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5005호)	위성곤의원	2025.12.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직 접 회부(2025. 12.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039호)	이훈기의원	2024.6.2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 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 회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241호)	강득구의원	2024.9.2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 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 회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8890호)	김선교의원	2025.3.13.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 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 회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159호)	한정애의원	2025.8.1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직 접 회부(2025. 12.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3376호)	조지연의원	2025.9.3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직 접 회부(2025. 12.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4367호)	김소희의원	2025.11.1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직 접 회부(2025. 12.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756호)	김성희의원	2024.12.1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 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 회 회부

나.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2025. 12. 18.)에서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8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2025. 12. 18.)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호·배려 원칙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수립·이행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독립적 분석·검증체계와 국민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 보호 원칙을 국가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며,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도입하고,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위한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기후정책 연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헌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

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정책 수립·이행 시 취약계층에 대한 과급효과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함(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3조제3호의2 신설).
- 나.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 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구성 규모를 30~60인으로 조정하고, 기후재정, 금융 전문가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반영 사항,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15조 및 제16조).
- 라.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학습·토론하여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고, 정부가 주요 기후정책 및 계획 수립 시 시민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

며, 국민 인식조사 및 정책반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마. 헌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31조).

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및 관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고, 기후정책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후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과 정책 연계를 강화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70조제3호 및 제72조제3항).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육불화황(SF6)”을 “육불화황(SF6) , 삼불화질소(NF3)”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 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제6항 전단 중 “원활한”을 “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설정하여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원활한”을 “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을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정의로운 전환”을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인

제16조제1호 중 “기본방향에”를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점검에”를 “점검 및 부진사항과 개선사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중전의 제11호) 중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를 “기후위기 대응에”로, “이해 증진”을 “인식 제고”로, “홍보·”을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로 한다.

7.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10. 제10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국가계획에 반영된 예산(이하 “기후예산”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이하 이 조에서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기후시민회의는 전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기후시민회의는 토론회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회의 참석 및 의견 청취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 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민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제5항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 “헌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하 “헌법기관등”이라 한다)”로, “자발적으로 설정하여”를 “설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발적으로 설정하여”를 “설정하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온실가스”를 “온실가스[삼불화질소(NF3)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1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헌법기관등은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기관등은 해당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시책의 범위에서 그 내용과 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헌법기관등은 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실적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헌법기관등이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중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정보센터에”를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구축, 종합정보센터 운영,”을 “구축,”으로 한다.

제5장에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①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온실가스 배출·전망 분석,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관리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그 밖에 과학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연구 추진 및 부문별 연계 데이터 생산·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조사·연구”를 “정책지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2조제3항 중 “기금의”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금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7조의 개정규정: 2026년 5월 12일
2. 제2조제5호, 제8조, 제16조, 제19조의2, 제26조, 제31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46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

제2조(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15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합정보센터의 사무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센터의 소관 사무는 과학원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합정보센터가 행한 행위는 과학원이 행하거나 과학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 중 기후대응기금의 보증사업을 위한 계정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온실가스”를 “온실가스[삼불화질소(NF₃)는 제외한다]”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p> <p>6. ~ 12.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 ----- ----- ----- ----- <u>육불화황(SF₆) , 삼불화질소(NF₃)</u>----- -----.</p> <p>6. ~ 12. (현행과 같음)</p> <p><u>12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u></p>

13. ~ 17. (생략)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 8. (생략)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 ⑤ (생략)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 17. (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원칙)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 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4. ~ 8.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
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
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
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
· 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
는 사람

<신설>

-----위원회
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
활한-----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
원-----.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
융-----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⑤ ~ ⑨ (생략)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3. (생략)

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6. (생략)
<신설>

7.·8. (생략)

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

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인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

-----.

1. -----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2.·3. (현행과 같음)

4. ----- 점검 및 부진사항과 개선사항에

5.·6. (현행과 같음)

7.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삭제>

10. 제10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국가계획에 반영된 예산

10. (생략)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12. ~ 14. (생략)

<신설>

(이하 “기후예산”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12. 기후위기 대응에-----
---인식 제고---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13. ~ 15. (현행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이하 이 조에서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기후시민회의는 전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기후시민회의는 토론회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1. ~ 3. (생략)

② (생략)

<신 설>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회의
참석 및 의견 청취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기후위기대응 국민의
식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
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
응과 관련한 국민의식조사 등
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기후위
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⑦ (생략)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

⑥ (생략)

<신설>

<신설>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
-----온실가스[삼불화질소(NF3)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헌법기관등은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기관등은 해당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시책의 범위에서 그 내용과 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헌법기관등은 제7항에 따른

<신 설>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 (생 략)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그 밖에 과학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연구 추진 및 부문별 연계 데이터 생산·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책지원-----

을 수행한다.

③ ~ ⑤ (생략)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신설>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3. (생략)

<신설>

4. ~ 12.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기후위기 취약계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0조(기금의 용도)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 ~ 12. (현행과 같음)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 (생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④ ~ ⑥ (생략)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금의-----

-----.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④ ~ ⑥ (현행과 같음)